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손자용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이 조례안은 2011년 12월 13일 최병윤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2월 1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3조)
-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안 제4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안 제5조)
-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6조)

4. 검토의견

금번 제정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 및 예우를 위해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산보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6조부터 제16조 까지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안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근대화의 터전을 만들었으며, 변화·도전·창조의 정신을 더해 선진일류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뉴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8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개정으로 4월 22일이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로 제정되었으며, 새마을운동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에 수출되며 국제화되는 등 코리아 브랜드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구광역시('11.05.30), 대전광역시('11.04.08), 경기도 ('09.10.30), 강원도('09.12.31), 충청남도('09.12.30), 전라남도 ('10.1.8) 등 6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충청북도의 7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총 93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중에 있는 등 운영선례가 있는 등 법체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붙임 :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부. 끝.

타 시도 새마을 운동 지원조례 제정 현황

조례현황	
제정지자체 (6)	대구광역시(11.5.30) 대전광역시(11.4.8) 경기도(09.10.30) 강원도(09.12.31) 충청남도(09.12.30) 전라남도(10.1.8)
미제정지자체 (10)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충청북도

기초자치단체도 새마을 운동 지원조례 제정 현황

조례현황	
충청북도 (7)	청주시(08.10.31), 충주시(08.05.20), 제천시(10.02.12) 청원군(09.04.20), 옥천군(10.12.20), 진천군(09.06.08) 음성군(11.06.10)
서울특별시 (4)	구로구(10.02.10), 동대문구(11.07.25), 영등포구(11.05.26), 용산구(11.4.15),
부산광역시 (12)	중구(11.08.08), 동구(11.05.20), 영도구(11.06.30) 부산진구(11.10.13), 동래구(11.05.04), 남구(11.07.11) 사하구(11.06.10), 금정구(11.02.11), 연제구(11.07.20) 수영구(11.10.17), 사상구(11.12.15), 기장군(11.09.19)
대전광역시 (1)	서구(11.8.2)
광주광역시 (1)	서구(10.7.1)

		조례현황
경 기 도 (11)		수원시(11.5.6), 동두천시(10.1.12), 구리시(9.12.23) 남양주시(9.11.20), 오산시(11.12.14), 의왕시(10.9.14) 하남시(10.3.23), 양주시(10.3.15), 여주군(9.12.22) 연천군(11.11.23), 양평군(9.8.5)
강 원 도 (8)		강릉시(11.6.8), 속초시(7.6.15), 영월군(10.10.8) 평창군(9.11.13), 철원군(10.1.6), 화천군(10.2.19) 양구군(9.5.8), 인제군(9.7.27)
충 청 남 도 (1)		아산시(9.11.5),
전 라 남 도 (21)		목포시(9.8.3), 여수시(10.11.22), 순천시(08.5.9) 나주시(10.10.1), 광양시(8.12.31), 담양군(11.11.21) 곡성군(10.1.15), 구례군(10.11.22), 고흥군(9.1.9) 보성군(10.11.19), 화순군(11.10.18), 장흥군(10.5.24) 강진군(11.1.7), 해남군(10.5.20), 영암군(10.5.17) 무안군(10.1.04), 함평군(9.8.5), 장성군(9.12.24) 완도군(10.8.4), 진도군(10.3.29), 신안군(9.12.10)
경 상 북 도 (20)		포항시(8.11.17), 김천시(10.2.25), 안동시(10.1.6) 구미시(9.6.9), 영주시(10.3.2), 영천시(10.5.6) 상주시(10.3.25), 문경시(10.2.25), 경산시(10.4.27) 청송군(10.10.6), 영양군(10.1.8), 영덕군(10.3.3) 청도군(9.9.24), 고령군(9.12.31), 성주군(9.4.16) 칠곡군(9.12.29), 예천군(10.9.16), 봉화군(9.12.22) 울진군(10.11.26), 울릉군(10.3.25)
경 상 남 도 (7)		함안군(9.10.21), 창녕군(9.11.19), 고성군(9.11.16) 남해군(9.10.9), 하동군(10.12.30), 거창군(9.8.12) 합천군(9.8.13)
총 계		93개 자치단체